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
| 1 | 2010. 2. 24 | | 16 | 2020. 5. 29 | |
| 2 | 2011. 9. 1 | | 17 | | |
| 3 | 2012. 2. 27 | | 18 | | |
| 4 | 2013. 4. 22 | | 19 | | |
| 5 | 2014. 4. 22 | | 20 | | |
| 6 | 2015. 2. 27 | | 21 | | |
| 7 | 2015. 10. 28 | | 22 | | |
| 8 | 2016. 3. 1 | | 23 | | |
| 9 | 2016. 10. 28 | | 24 | | |
| 10 | 2017. 3. 1 | | 25 | | |
| 11 | 2017. 6. 19 | | 26 | | |
| 12 | 2018. 3. 1 | | 27 | | |
| 13 | 2019. 3. 6 | | 28 | | |
| 14 | 2019.8.26 | | 29 | | |
| 15 | 2020. 3. 9 | | 30 | | |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장학금 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20>

① ~ ② 삭제 <2009.1.20>

제3조 (선정기준) 장학생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다.

1. 재능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를 우선한다.
2. 경제사정이 동일할 경우 학업성적, 품행, 자질 등의 순으로 한다.
3. 학부(과) 및 학년을 감안하여 인원을 배정한다.

제4조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은익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북한귀순동포 장학금, 향대 장학금 및 기타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0>

1. 신청기간

- 가. 은익, 국가유공자, 북한귀순동포, 향대장학금 등 신청 장학금의 경우는 매학기 공지된 기간 내에 신청한다.<개정 2016.10.28>
- 나. 삭제<2016.10.28>

2. 제출서류

- 가. 은익장학금 : 은익A 및 은익B 장학은 국가장학금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함으로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은익C 장학은 학부(과)장 추천서와 파산증명서, 압류증명서, 자연재해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개정 2013.4.22.>
- 나. 국가유공자장학금 : 해당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증명서 1부를 제 1호의 기간 내에 학생처로 제출한다.
- 다. 북한귀순동포 장학금 :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각 1부를 제1호의 기간 내에 학생처로 제출한다.
- 라. 향대 장학금 : 재학증명서 각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 1호의 기간 내에 학생처로 제출한다.
- 마. 기타 학비 보조금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가정형편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1호의 기간 내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만 각종 장학의 우선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제5조 (선정절차) 장학생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생처장은 인원을 배정하여 각 학부(과)장과 관계부서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한다.

2. 장학위원회는 추천된 장학생 대상자를 심의 선정한다. 단, 장학금 지급시기를 감안하여 추천된 장학생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장학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학생처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 선정한다.

제6조 (장학생 명부) 학생처는 매 학기마다 개인별 장학금 지급 내역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개정 2016.10.28>

제7조 (지급결과 보고) 학생처는 장학금 지급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10.28>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의 성적기준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된 세칙 시행일 이전에 선발된 학생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단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 단 201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 단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며,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09.1.20.)<개정2010.2.24,2011.9.1,2012.2.27.,2013.4.22., 2014.4.22., 2015.2.27.,2015.10.,2016.3.1.,2016.10.28.,2017.3.1.,2017.6.19.,2018.3.1.,2019.3.6.,2019.8.26.,2020.3.9., 2020.5.29.>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

| 구분 | 장 학 명 | 장학금 지급내용 | 성적기준 | |
|---------|-------|--------------------|--|-------------------------------------|
| 성적우수 장학 | 신입생 | 수능최우수 장학금 | · 수능능력시험 성적 최고득점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 평 점 평 균 이 3.50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자격 상실 |
| | | 한진그룹 장학금 | · 학부(과) 별 수능능력시험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학부(과)수석장학) | - |
| | | 정석장학금 | · 정석B : 입학전형 별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 |
| | | 외국인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 · 입학처에서 토픽 성적 우수자로 추천한 외국인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토픽 6급 : 등록금 전액 - 토픽 5급 : 등록금의 50% - 토픽 4급 : 등록금의 30% · 본교 한국어교육원을 수료하고 한국어 교육원에서 추천한 외국인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금의 50% 이내 · 외국인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학처의 “순수외국인 장학 추천위원회” 에서 심의, 추천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가 선발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에게 지급하는 정액(입학금 면제) 장학금 | - |
| | 재학생 | 전체수석 장학금 | · 신입학 시 수능최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 평 점 평 균 이 3.50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자격 상실 |
| | | 한진그룹 장학금 | · 학부(과) 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학부(과)수석 장학) | 직전학기 평점 평균 3.80 이상 |
| | | 정석장학금 | · 정석A(학부(과)차석 장학) : 학부(과)별 성적 차순위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정석C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보라호장학, T&J장학 포함) · 정석D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0 이상 |
| | | 연계/융합 및 특성화 전공 장학금 | · 대학에서 지정한 연계/융합전공 및 특성화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0이상 |
| | | 외국인 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 · 순수 외국인(부모, 본인 모두 외국 국적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4.30이상: 등록금 전액 -4.00이상: 등록금의 60% 감면 -3.50이상: 등록금의 50% 감면 -3.00이상: 등록금의 30% 감면 -2.50이상: 등록금의 20% 감면 | - |

| 구 분 | | 장 학 명 | 장학금 지급내용 | 성적기준 |
|----------|------------------|---------------------|---|--|
| 기타 장학 | 신입생 재학생 공통 | 국가유공자 장학금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독립유공자((손)자녀)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의 50% 장학금, 본인의 경우 100% (단, 보훈청에서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를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 북한이탈주민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의 50% 장학금(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대학 수업료 면제대상으로 인정한자에 한함. | 본인의 경우 직전 2개 학기,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100 이상 |
| | | 외국인 학생 특별 장학금 | ·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2.75 미만의 성적을 3회 이상 취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말레이시아 국비 유학생으로 입학한 자에게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정액(학기당 150만원) 장학금. 단, 말레이시아 국비 유학생은 우리 대학의 성적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음. -2.75 미만의 성적을 3회 이상인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외국인 재학생 중 재학 기간 내에 토픽시험 차상위 레벨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 ·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원 출신 외국인 학생 중 입학 후 첫 학기를 수료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 평점평균 2.75 이상 |
| | | 군위탁생 장학금 |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각 군 참모총장의 특별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협정에 근거하여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 - |

| 구분 | | 장 학 명 | 장학금 지급내용 | 성적기준 |
|---------|------------|--------------------|---|--------------------|
| 가계곤란 장학 | 신입생 재학생 공통 | 은익장학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익A : 소득 0분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한국장학재단 자료 기준) · 은익B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은익C(학부(과) 추천장학) : 파산, 사고, 천재지변, 기타 학비보조가 필요할 경우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는 장학금(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
| 기타 장학 | 신입생 재학생 공통 | 교환학생장학금 | · 엠브리리들 항공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 |
| | | 국제교류학생 장학금 |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 |
| | | 해외탐방 장학금 | · 해외연수, 해외봉사활동 및 국제대회 등의 참가자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 - |
| | | 해외대학 교류 장학금 |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대학에 1개 학기 이상 파견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 - |
| | | KAU Challenger 장학금 | · 세계의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주고자 본교가 공모한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 - |
| | | 봉사 장학금 | ·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본교 교육정신을 선양한 학생 및 학생자치 활동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 평균 2.25 이상 |
| | | 교직원 자녀 장학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중인 본교 교직원, 정석인하학원 임직원, 정석인하학원 산하 각급학교 교직원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일 경우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 : 본교 교직원 및 정석인하학원 임직원의 자녀 - 수업료의 3분의 2 : 재단산하 각급학교 교직원의 자녀 · 단, 연봉계약직으로 임용된 교직원(재단임직원 포함), 연구원, 조교, 사무보조원 및 일용직 등은 제외한다. · 해당 교직원 및 임직원이 정년 퇴직, 명예퇴직,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시 재학중인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 | 직전학기 평점 평균 2.25 이상 |

| 구분 | 장 학 명 | 장학금 지급내용 | 성적기준 | |
|-------|------------------|-------------|---|--------------------|
| 기타 장학 | 신입생 재학생 공통 | 항대 장학금 | · 본교에 형제, 자매가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두 명 중 1명에게 졸업 시 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 평균 2.75 이상 |
| | | 계약학과 장학금 | · 본교와 계약학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 |
| | | 국가 고시 장학금 | ·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일 기준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는 장학금 - 5급(1차) : 등록금 반액(1회) - 5급(최종) : 등록금 전액 (졸업 시 까지) - 7급(최종) : 150만원 |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
| | | 전문자격시험 장학금 | · 국가에서 주관하는 전문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게 합격일 기준 다음 학기에 지급하는 장학금 -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노무사 : 150만원(1회) |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
| | | 근로 장학금 | · 행정부서, 학부(과) 사무실 또는 부속(부설) 기관 등에서 근로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 |
| | | 공로기념 장학금 | · 대학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를 기리기 위해서 공로자 명의로 지급하는 장학금 | - |
| | | 장애인 복지장학금 | · 장애우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국가로부터 장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장애 등급 중증(1~3등급) : 등록금 반액 - 장애 등급 경증(4~6등급) : 등록금 1/4 |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
| | | 기타 장학금 | ·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기준 및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함.(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 - |
| | | 다문화가족지원 장학금 |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

| 구분 | 장 학 명 | 장학금 지급내용 | 성적기준 |
|-----------|---|---|-----------------|
| 기타 장학 | 특별장학금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① 우리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학생 ②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특기를 가진 학생 ③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생 | - |
| | 전문자격시험 준비반 장학금 | · 전문자격시험 준비반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 | 직전학기 성적 3.50 이상 |
| | Premium English 장학금 | · Premium English 수강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 |
| | KAU 전문인재 양성 장학금 | · 졸업대상자 중 전체 평균평점 4.0 이상인 학생 또는 창업실적이 우수하여 창업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 중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첫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장학금.(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 |
| | 전명섭 장군 장학금 | · 항공운항학과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업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 - |
| | 김학현 장학금 | · 항공운항학과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 - |
| | 학생활동 마일리지장학 | · 대학에서 지정한 특강 및 비교과프로그림 참여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
| | 명예 장학금 | · 장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된 자가 해당 장학 이외의 전액 장학금 수혜 또는 기타사유로 ‘장학포기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장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여하는 장학명칭 | - |
| | 홍보도우미 장학금 | · 본교 홍보도우미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25 이상 |
| | 생활관 복지 장학금 | · 생활관 우수 생활자 및 가계곤란자 등에 대해 생활관장의 추천에 의해 학기별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금 초과 지원 가능 | - |
| 소수자지원 장학금 |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족 학생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학생에 대해 생활비성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금 초과지원 가능 | - | |

| 구 분 | | 장 학 명 | 장학금 지급내용 | 성적기준 |
|----------|-----|-----------|---|------|
| 기타 장학 | 재학생 | SPACE 장학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이내 졸업 인증여건(SPACE 인증) 조기 인증자에 대해 지급하는 정액(50만원) 장학금 * 등록금 초과 지원 가능 | - |